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선교·최수진·박충권

김상훈 · 김성원 · 구자근

김예지 • 우재준 • 윤한홍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,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.

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 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(안 제27조제1항).
- 나.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(안 제28조제1항제7호).
- 다.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(안 제29조).

법률 제 호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광업권자"를 "실제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 광업권자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호와 제2호"를 "제1호, 제2호, 제6호 및 제7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
 - 가.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했을 것(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 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, 그 이행을 완료한 경 우를 포함한다)
 - 나.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
 - 다.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 (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)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 행이 완료되었을 것

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

-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 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하는 경우 재해방지, 산지경관 보전 등 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- 4.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 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석채취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 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)	제27조(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)
① 「광업법」 제3조제3호의2・	①
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	
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	
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	
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	
려는 자는 <u>광업권자</u> 나 조광권자	실제 토석을 채취하
(租鑛權者)의 동의를 받아야 한	려는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
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<u> 우 광업권자</u>
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.</u>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(토석채취허가의 기준) ①	제28조(토석채취허가의 기준) ①
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	
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	
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	
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	
(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	<u>제1호, 제2호, 제6호</u>
호만 해당한다)의 기준에 맞는	및 제7호
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

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 준을 충족할 것

- 가.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 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 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했을 것(토석채취방법 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 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을 받고,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)
- 나.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
- 다.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 구의 명령(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)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 료되었을 것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
- ② ~ ④ (생 략) 제29조(채석단지의 지정・해제) 제29조(채석단지의 지정・해제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④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 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.

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 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하는 경우 재해방지,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 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 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 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<u>⑤</u> (생 략)

<신 설>

1. ~ 3. (생략)